

제76조의2~제76조의7

성실납세제도 (2010. 12. 30 삭제)



제76조의2~제76조의6의 요약

※ 2011.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폐지. 다만, 현재 성실납세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2013. 12. 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성실납세제도 허용됨.

관련조문

[2010. 12. 30 삭제]

● 법 제76조의2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 내국법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성실중소법인”이라 한다)은 제2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수입금액이 5억원(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 이하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복식부기에 의하여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할 것 (2008. 12. 26 개정)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법인 (2008. 12. 26 개정)
 -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상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법인
 - 다. 판매량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상표 등의 사용 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법인
 - 라. 특정 법인(3개 이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만 원재료 등을 공급 받거나 특정 법인만의 상품·제품 등을 취급·판매하는 법인 또는 특정 법인에만 당해 법인의 상품·제품 등을 판매하는 법인
 -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8. 12. 26 개정)
 -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에 해당하는 법인
 - 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의 수출에 의하
여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법인
- 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매출대금 및 매입대금의 결
제가 이루어지는 법인 (2008. 12. 26 개정)
-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법인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내역
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②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성실중소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7. 7. 19 신설)
-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성실중소법인이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
해 사업연도와 그 다음 3사업연도(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사업연도) 동안 성실납세방식
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7. 7. 19 신설)
-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성실중소법인이 제1항제2호의 요
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납세방식
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2007. 7. 19 신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의 판정 및 승인, 수입금액
의 계산,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유예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2008. 12. 26 개정)

● 법 제76조약3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 ①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
는 것을 제외하고 제15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1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호 및 제3호와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7. 19 신설)
- ② 제2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
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개정)
- ③ 제2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
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포함한다)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
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7. 19 신설)
- ④ 제2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7. 19 신설)
- ⑤ 제26조·제27조 및 제28조제1항제4호는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
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
는 과다경비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7. 19 신설)
- ⑥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범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부채의 평가, 준비금과 총당금의 손금산입, 성실납
세방식을 신규로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7. 19 신설)

● **법 제76조의4 【세액의 계산】**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76조의5 및 제76조의6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7. 19 신설)

● **제76조의5 【표준세액공제】**

- ① 성실중소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25(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인은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7. 7. 19 신설)
-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7. 19 신설)

● **법 제76조의6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 ① 성실중소법인이 제60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07. 7. 19 신설)

$$\text{당해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times \frac{\text{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금액}}{\text{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② 제1항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7. 19 신설)
-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손금을 과다계상한 경우 그 미달금액 또는 초과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경정된 손금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007. 7. 19 신설)

● **법 제76조의7 【신고·납부 등】**

- ①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007. 7. 19 신설)
- ②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7. 19 신설)
- ③ 성실중소법인의 중간예납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7. 19 신설)
- ④ 성실납세방식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성실중소법인에 대하여는 제6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7. 19 신설)
- ⑤ 제60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납부, 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7. 19 신설)

I. 성실납세제도

1. 본조의 개관

사업규모가 적고,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복식부기 원칙을 유지하고, 매출·매입·경비 등은 철저히 자료에 근거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 및 근거과세 유지하면서 지출증빙 수취 및 재무제표 제출 등 각종 의무사항을 지키는 경우에는 복잡한 각종 경비(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손비 인정한도 등 소득계산방법을 단순화 및 표준화했다.

또한 실제 적용이나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공제나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대신 표준세액공제와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액계산을 단순화하며,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며, 증빙에 의해 세금탈루 등이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경정을 배제한다.

2. 성실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법 제76조의2제1항)

①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

성실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은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다음의 법인들이 해당된다.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법인

-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를 도입한 사업자(제조업, 물류업, 유통업 등)
- 영화상영권 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영화관)
- 관리회사(본사)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차료·로얄티를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 특정 법인(3개 이하)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의 제품만 취급·판매하거나, 특정 법인에게만 납품하는 사업자
- PG(결제대행사업자) 또는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매수·위탁받아 판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구입후

판매하는 사업자

- 사업자 연합회에서 전체 수입금액을 일괄배분하는 사업자
- 신용장 발급을 통해 상품(제품)을 전액 수출하는 사업자
- 국세청에 모든 사업용 계좌를 신고한 사업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형태 등에 의해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실사업자

다만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성실납세방식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법인이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 그리고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20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 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

성실납세제도 적용대상 법인의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을 말하며, 사업연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다른 법인과 의 합병시는 제외)에도 최초 1회에 한하여 초과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최초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이면 성실납세방식제도를 계속 적용한다. 유예기간 후에는 매년 성실납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한다. 관련 시행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20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②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

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의 매출액을 1년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008. 2. 22 신설)

③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라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개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최초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이면 성실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2010. 6. 8 개정)

3. 사업용 계좌 개설 (영 제120조의3)

① 사업용 계좌의 의의

성실납세방식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 법인명의로 개설한 계좌로서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계좌가 해당되며 2 이상의 계좌를 가질 수 있다. 이때 전자상거래사업의 경우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대금은 매출대금을 말하고,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대금은 매출대금 및 매입대금을 말한다.

4. 성실납세방식의 신청·승인 절차

(법 제76조의2제2항·제3항)

① 종료일 1월 이내 신청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해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20조의4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등】

①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중소법인(이하 ‘성실중소법인’이라 한다)은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

-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납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승인을 받은 성실중소법인이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그 다음 3사업연도(거래내역 불투명시 5사업연도) 동안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5.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취소 (법 제76조의2제4항)

① 1월 이내 성실납세적용여부 통지

관할세무서장은 성실납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즉시 1월내 성실납세 적용 대상자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하는데 기한내 소명이 없거나 소명내용이 성실납세 적용 요건에 불충분한 경우 등은 소명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내에 성실납세방식 적용을 승인취소할 수 있다.

성실납세방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성실납세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20조의5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승인 취소】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성실중소법인이 법 제76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법 제76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명이 없거나 소명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성실납세방식 적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008. 2. 22 신설)

6. 성실납세 자문위원외 설치 및 운영 (영 제120조의6)

성실납세 대상자 지정을 취소통보시에는 미리 성실납세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성실납세 자문위원회의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20조의6 【성실납세자문위원회】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의4제2항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하거나 제120조의5제2항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성실납세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08. 2. 22 신설)
- ② 성실납세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2008. 2. 22 신설)
 1. 세무서장이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 4명 이내
 2. 법률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 : 10명 이내
- ③ 성실납세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의 자가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008. 2. 22 신설)
-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08. 2. 22 신설)
- ⑤ 성실납세자문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회의소집 및 통지, 의결방법,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부터 제8항, 제10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세무서장”으로, “국세심사위원회”는 “성실납세자문위원회”로 본다. (2008. 2. 22 신설)
- ⑥ 성실납세자문위원회의 운용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8. 2. 22 신설)

II. 성실납세제도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법 제76조의3)

성실납세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 계산은 각 사업연도 소득(익금·손금)에서 10년 이내 발생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본 법상의 비과세소득이나 소득공제, 조특법상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종 경비(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 등) 등을 단순표준화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의 단순화 (법 제76조의3제2항)

① 정액법으로 5년(건물은 20년) 적용

성실납세방식 적용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일반법인의 자산별이나 업

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손금계상여부와 상관없이 정액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며, 내용연수는 일률적으로 건물과 구축물은 20년, 그 외의 고정자산의 대하여는 5년으로 한다. 즉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5년간 매년 20%씩 감가상각비로 비용계상하면 된다.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중에 신규 취득한 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반영한다.

300만원 미만인 자산의 경우는 즉시상각이 가능하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20의7 【감가상각비 계산특례】

- ① 법 제7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상각부인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정액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26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2항제1호의 정액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 ④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은 “300만원”으로 하여 적용한다. (2008. 2. 22 신설)

2. 성실납세방식 적용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성실납세적용 전 취득자산은 5년(20년)-경과연수를 적용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변경하여 취득후 5년(건물 및 구축물은 20년)이 경과한 자산은 즉시상각하며, 취득 후 5년(건물 및 구축물은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산은 (5년 또는 20년-경과연수)를 내용연수로 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예를 들어 기준내용연수가 10년인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5년이 지난 후 성실납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5년 남았으나 내용연수가 5년으로 변경되어 감가상각할 수 없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잔존가액 전액을 감가상각하면 된다.

또한 기계장치 취득하여 2년이 지난 경우라면 성실납세법인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인 5년에서 2년을 차감한 3년에 대해 정액법으로 변경하여 3년간

감가상각을 하면 된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120의7 **【감가상각비 계산특례】**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건물과 구축물은 20년)으로 한다. 이 경우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008. 2. 22 신설)

1. 건물과 구축물 : 20년-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경과연수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 : 5년-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경과연수

③ 제2항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 내용연수가 0 이하인 경우에는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8. 2. 22 신설)

3.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법 제76조의3제3항)

① **매출액의 0.5% 한도**

성실중소법인은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 구분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0.5%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이월공제는 배제한다.

4. 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법 제76조의3제4항)

① **1,900만원 정액한도**

성실중소법인의 접대비는 일반중소기업의 한도 1,800만원보다 100만원 더 많은 정액한도로 1,900만원 한도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1,90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된다.

5.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배제 (법 제76조의3제5항)

성실중소법인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과다경비를 제외한 과다경비 손금불산

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이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퇴직급여충당금 계산특례 (영 제120조의8)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총급여액의 20%(일반법인은 35%)를 한도로 한다.

당기 한도액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1년 이상 근속한 사용인 등의 총급여액의 5%를 한도로 한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20조의8 【퇴직급여충당금 계산특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6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2008. 2. 22 신설)

III. 성실납세방식의 세액계산 특례

1. 조특법상 감면제도 배제 (법 제76조의4)

성실중소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조특법상 감면규정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2. 표준세액 공제제도 (법 제76조의5)

① 비수도권은 25%, 수도권은 15%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성실중소법인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25%(수도권소재 법인은 15%)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 중 어느 하나가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전체에

대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즉 한 업종이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액에 대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에 대하여는 본점이 수도권에 있을 때에만 15%의 표준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성실납세방식 적용받기 전에 공제받지 못한 조특법상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은 배제한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20조의9 【표준세액공제】

- ① 성실중소법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종 중 어느 하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전체에 대하여 법 제76조의5제1항을 적용한다. (2008. 2. 22 신설)
- ② 법 제76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에 대하여는 본점이 수도권에 있을 때에만 100분의 15의 공제비율을 적용한다. (2008. 2. 22 신설)
- ③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이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공제받지 못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2008. 2. 22 신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감면 업종
 - 가. 작물재배업
 - 나. 축산업
 - 다. 어업
 - 라. 광업
 - 마. 제조업

- 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사. 건설업
- 아. 도매 및 소매업
-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차. 출판업
- 카.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 타. 방송업
- 파. 전기통신업
-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거. 정보서비스업
- 너. 연구개발업
- 더. 광고업
-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머. 포장 및 충전업
- 버. 전문디자인업
-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 저. 엔지니어링사업
- 처. 물류산업
- 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0. 12. 27 개정)
-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10. 12. 27 개정)
-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2010. 12. 27 신설)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010. 12. 27 신설)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010. 12. 27 신설)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010. 12. 27 신설)

3.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법 제76조의6)

① 전년대비 매출액 1.15배 초과시 초과매출액 전액 공제

성실중소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전년도 수입금액대비 1.15배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매출액 상당세액은 전액을 공제한다.

②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배제 사유

다만,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직전연도의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으로 다음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사업장 면적이 전년도 보다 50% 이상(사업장 이전시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다른 업종으로의 변경 및 다른 업종의 추가
-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115%에 미만하는 경우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20조의10【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법 제7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사업장 면적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3.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본다. (2009. 2. 4 신설)

IV. 성실납세제도의 신고납부 (법 제76조의7)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는 일반법인과 동일하다. 다만, 중간예납에 대하여는 직전연도 법인세액의 1/2를 적용하며, 당해연도 6개월분의 가결산에 의한 법인세 적용은 배제한다. 또한 객관적 증빙에 의한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정을 배제한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20조의11 【신고·납부 등】

- ① 성실중소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2009. 2. 4 신설)
- ② 성실중소법인은 제1항의 신고서에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서류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09. 2. 4 신설)